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안번호	14933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357)	박찬대의원 등 115인	2025.7.8.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5.9.4.) 상정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9.19.) 상정/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9.23.) 상정/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12.1.) 상정/심사
2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16)	이성윤의원 등 25인	2025.9.18.	· 「국회법」 제58조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회부(2025.9.22)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9.23.) 상정/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 사제1소위(2025.12.1.) 상정/심사/의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 정위원회(2025.12.3) 상정/심사/의결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는 이
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성윤 의원안은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
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2.3.)는 법안심

사제1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2025.12.3.)는 이성윤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서 마련한 대안과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

안을 의결함.

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5.12.3.)는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성윤 의원안은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음. 12·3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사면 제한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전담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외환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위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사면 제한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대상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 제2조 제1항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사건으로 함(안 제2조).

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경력이 유사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2개 이상의 항소심 전담재판부에서 전담함(안 제10

조).

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위하여 현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장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

아. 대상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구속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함(안 제22조).

자. 내란죄, 외환죄 또는 반란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23조).

차. 제보자등은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고,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에 기여한 경우 관계기관은 형의 면제, 감경 등의 선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안 제24조).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고,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건)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및 12·3 비상계엄 전후로 발생한 관련 사건으로 한다.

제3조(법관의 제척) 대상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한 전심재판 또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선효력)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전속관할)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검증·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7조(영장전담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대상사건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8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제1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다.

② 각 전담재판부는 경력이 유사한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9조(재판관할 등) ①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대상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사건이 이송된 경우 공판갱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항소심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항소심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 심리만을 전담한

다.

② 각 전담재판부는 경력이 유사한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제16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1조(항소심 재판관할 등) ① 대상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대상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로 대상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사건이 이송된 경우 공판갱신절차는 간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항소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 ① 대상사건에 대한 재판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판과정 기록을 목적으로 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재판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①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각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담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한다.

⑦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추

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를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판사회의) 전담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
원 3명은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제18조(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 ① 추천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자
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의결에서 제
척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추천위원회의 회의) ① 추천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
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전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추천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법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법원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대상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면 및 감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면법」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면·감형·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동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

2.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로 유죄 확정된 자

제24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제보자등은 정보 제공 또는 제공 의사로 인하여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

니된다.

② 국가는 제보자 보호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보자등이 내란죄 기타 관련 범죄의 공범이라 하더라도 자진신고 또는 진술로 수사에 협조한 경우, 관계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재판부는 「형법」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재판부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2주 이내에 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대상사건에 대한 모든 판결이 확정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3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재판부로 대상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이전까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한다.